한라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
장학금 지급 규정

(제　　정 : 2011. 4. 1)
(3차 개정 : 2019. 4. 22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라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(대학원학칙 제37조)의 장학금 지급의 합리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) 대학원의 장학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,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교내 면학장학금 : 신입생 및 재학생 전원(개정 2019.4.29.)

장학금 지급액	대 상 자	비　고
입학금의 50%	신입생	
수업료의 50%	신입생 및 재학생	
수업료의 60%	상공회의소 임직원	
수업료의 70%	학군제휴 군 위탁생	
수업료(입학금 포함)의 70%	본교 교직원	본교 직제 소속 조교 및 계약직 포함

② 특별장학금

1. 수업 및 학문 연구활동, 학생의 가사사정, 대학원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2. 본교 교직원 장학금을 2학기 이상 적용받고 정상 퇴직한 경우에는 잔여학기에 대하여도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(신설 2013.1.28.)

제3조 (장학사정) 장학사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. 다만, 교외장학금은 출연하는 장학재단, 기관, 단체 또는 개인 기탁자의 정신과 장학금 사용목적을 우선하여 사정한다.

제4조 (장학금 지급 제한) ① 장학금은 중복지급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중복 지급할 수 있다.

② “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” 제4조 제7항에 의거하여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수료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5조 (기타 연구비 지급) 연구의욕이 높은 학생에게 전공분야에 대한 논문 및 발표 지원을 위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할

수 있다.

제6조 (지급방법) 장학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내장학금의 지급방법은 해당 금액의 학비 감면을 원칙으로 한다.
2. 교외장학금의 지급은 교외장학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.

제7호 (기타사항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1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